

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통해 법령을 간결하고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문화 공간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(안 제5조의2)
- 나.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6조, 안 제13조)
- 다. 사용료 감면 사유를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10조)
- 라.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11조)
- 마.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의 처분 규정(안 제15조)
- 바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수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(붙임)

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때에는 시설의”를 “경우에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”로, “일부에 대하여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”를 “일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하며,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를 “하며 갱신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후단 중 “변경할 때”를 “변경할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변경하려는 때”를 “변경하려는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할 때”를 “해당할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인정할 때”를 “인정할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인정할 때”를 “인정할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인정할 때”를 “인정할 경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전단 중 “회관을 연장 사용하려는 때”를 “회관의 사용을 연장하려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실시할 때”를 “실시할 경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할 때”를 “할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미달할 때”를 “미달할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발매하려는 때”를 “발매하려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·난방 등의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
1. 국가기관, 경상북도,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, 공연, 전시 등
2. 국가기관, 경상북도, 시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3. 지역사회단체 중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
4. 그 밖에 공공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1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 중 “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사용자의 신청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제12조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

2.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
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

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.

1.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.
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.

3.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생하였을 때”를 “발생하였을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위배된 때”를 “위배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위반할 때”를 “위반할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있을 때”를 “있을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있을 때”를 “있을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인정할 때”를 “인정할 경우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하려는 때”를 “하려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정할 때”를 “인정할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였을 때”를 “하였을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	제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경우에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--일부--.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,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후단 신설>	② ----- -----하며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	<삭 제>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회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<삭 제>
제6조(사용허가) ① 회관의 사용	제6조(사용허가) ① -----

허가는 시장이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공공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7조(사용의 불허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
2. 회관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

-----, -----
----변경할 경우-----

-.
② -----

-----변경하려는 경우-----

-----.

<삭 제>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사용의 불허가) -----
-----해당할 경우-----
-----.

1. -----
-----인정할 경우
2. -----

이 있다고 인정할 때

3.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합
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8조(사용료) ① (생략)

② 회관을 연장 사용하려는 때에
는 회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
위에서 연장허가 할 수 있으며,
사용자는 퇴관시 초과 1시간마
다 사용료의 4분의 1에 해당하
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
한다.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
간으로 본다.

③ (생략)

④ 냉·난방을 실시할 때에는 기
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
다.

⑤·⑥ (생략)

제9조(관람료) ① 회관시설의 사
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
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
시 행사의 내용, 관람료, 관람예
정인원,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
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
을 받아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8

-----인정할 경우

3.-----

-----인정할 경우

제8조(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회관의 사용을 연장하려는
경우-----

-----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실시할 경우--
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관람료) ① -----

-----할 경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
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
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. 다
만,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
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
다.

④ (생략)

⑤ 관람권을 발매하려는 때에는
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
야 하며, 발매가 완료되면 발매
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시
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익을 목
적으로 하는 경우, 그 밖에 특별
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
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
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----,
-----미달할 경우

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발매하려는 경우

-----.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
다.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냉·난방 등의
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
자가 부담한다.

1. 국가기관, 경상북도, 시가 주
최·주관하는 행사, 공연, 전
시 등

2. 국가기관, 경상북도, 시의 산
하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
로 사용할 경우

3. 지역사회단체 중 행정기관의
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회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제1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

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

3.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후 변경사유발생즉시 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하였을 때

<신 설>

관에 입주한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

4. 그 밖에 공공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-----

-----.
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.

1. 사용자의 신청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제12조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

2.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
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.

1.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,

	<u>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 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 다.</u> <u>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 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 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 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 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.</u> <u>3.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 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 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.</u>
<u>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</u>	<u>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) ----- -----발생하였을 경우-----</u>

정지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된
때
2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
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
때
3.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
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4. 회관시설관리 상 긴급한 필
요가 있을 때
5. 그 밖에, 시장이 특히 필요하
다고 인정할 때

제13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 ·
② (생략)
③ 제2항의 현시가에 해당하는
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액으로
한다.

제15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
가 사용 기간 중 회관 내에 특
별히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사
용허가 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
의 개요, 내용, 안전대책 등을
포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
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회관의 관리 또는 안
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
-----.

- 1.-----위배된
경우
- 2.-----
-----위반할
경우
- 3.-----
-----있을 경우
- 4.-----
----있을 경우
- 5.-----
-----인정할 경우

제13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 ·
②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
제15조(사용자의 설비) ① -----

-----하려는 경우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인정할 경우-----

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설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그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예탁토록 하여,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예치금으로 충당한다.

-----.

③ -----
-----하였을 경우-----

-----.

④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
② ~ ③ 생략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생략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① 생략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□ 「소비자기본법」

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·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
□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단체·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소관 실·과		민원봉사과
입 안 자	과 장	장 도 익
	담 당	노 상 진
	담 당 자	김 성 현 (480-5715)